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2094-0470 ~ 5



제1645호 2010. 5. 31.

훈 령

제144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2
 제145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15

공 고

제2010-370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망우 제1구역 (망우동 178-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19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094-0474 / FAX: 2094-0479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훈 령

서울특별시중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0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1. 제정이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
- 나. 기간제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부서의 장”이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를 관리하는 중랑구 본청의 과장 및 담당관을 말하며,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말하며, 보건소는 과장 그리고 동 주민센터는 동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중랑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적용한다.

② 중랑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4조(사용원칙)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사용 시 사전에 예산편성 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기간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부서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적 처우의 구제절차 고지)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법 제4장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기간제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채용 및 운용

제7조(채용)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채용 시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계약 체결)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분을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은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제10조(근로자명부 작성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간제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근무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서류 등의 보존)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채용·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서류
5. 휴가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4장 복무

제12조(법령준수 및 복무의무) ① 기간제근로자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근로시간)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로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직종 및 근무환경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사용부서의 장과 기간제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연장근로)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휴게시간)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휴일) ①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은 1주일에 1회 주휴일로 정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1일) 및 해당 주간 근무일을 만근한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17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③ 연차 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18조(특별 휴가) ① 기간제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기준을 준용하여 경조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한다.

제19조(출산휴가 등) 기간제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생리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20조(참정권 등의 권리행사)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참정권 행사 또는 공적 직무를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표창)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2. 각종 사고의 예방과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에 대처한 공로가 있는 자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킨 자
4. 그 밖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제22조(교육훈련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교육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대상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수 및 보험

제23조(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규정에 따라 결의된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예산편성담당과장 및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수준을 결정하되, 시중노임단가 및 유사직종의 기간제근로자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과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간외근무상황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보험 가입 및 공제)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다.

제6장 안전 및 재해보상

제26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지켜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27조(작업안전용품)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등은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제28조(비상사태 발생 시의 조치) 모든 기간제근로자는 화재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용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등) 사용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재해보상)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은 이 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표준근로계약서

(제8조 관련)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갑”이라 한다)와 기간제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내용 :

3. 근로·휴게시간

○ 근로시간 : 00:00 ~ 00:00(시간)

○ 휴게시간 : 00:00 ~ 00:00(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4. 근로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 5일, 공휴일 제외)

*** 사용부서 및 기간제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 유급휴일 :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 근로자의 날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음.**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기간제근로자 명부

(제10조 관련)

소 속		최초근무일		사 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주 소			전 화	자 택 :
				휴대전화 :
학 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연월일	종별	연월일	종별	
경 력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종(담당업무)	비고
퇴직(해고)일		퇴직(해고) 사유		
기타				

* 학력, 자격면허, 경력 등은 필요시만 기재함.

시간외근무상황부

(제24조 관련)

연 번 :

부서명 : (20 . .)

결	담당	팀장	과장
재			

직명 및 등급	성명	시간외근무사항				비고
		구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 (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 부터 : 까지		월 일	
			: 부터 : 까지		월 일	
			: 부터 : 까지		월 일	
			: 부터 : 까지		월 일	
			: 부터 : 까지		월 일	
			: 부터 : 까지		월 일	
			: 부터 : 까지		월 일	
			: 부터 : 까지		월 일	
			: 부터 : 까지		월 일	

서울특별시중랑구 정원의 상근인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0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정원의 상근인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이유

부서별 인력요청에 따른 정원의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따른 정수 인력을 일부 개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정원조정 내용

【별표】 300일 이상 정원의 상근인력의 정수

부서별	현행							개정							증감
	계	시설물 관리	현장 공사	현장 지도	단순 잡역	도로 보수	환경 미화	계	시설물 관리	현장 공사	현장 지도	단순 잡역	도로 보수	환경 미화	
총 계	271	36	13		9	9	204	271	40	12		14	7	198	
총 무 과	12	5			7			15	10			5			3
자치행정과	4	4						4	4						-
기획홍보과	-							1				1			1
민원여권과	-							1				1			1
사회복지과	1				1			1				1			-
청소행정과	205				1		204	199				1		198	△6
공원녹지과	27	27						24	24						△3
교통행정과	-							1				1			1
도로과	9					9		7					7		△2
치수방재과	13		13					12		12					△1
맑은환경과	-							1				1			1
지역경제과	-							2	2						2
주민생활지원국 (일부창출)	-							2				2			2
보건행정과	-							1				1			1

서울특별시중랑구 훈령 제145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정원의 상근인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정원의 상근인력 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 개정 2002.1.28 훈령 제108호, 2003.2.7 훈령 제113호, 2003.3.7 훈령 제114호 >
 < 개정 2003.06.16 훈령 제115호 > < 개정 2004.05.21 훈령 제119호 >
 < 개정 2004.07.01 훈령 제121호 > < 개정 2004.11.01 훈령 제125호 >
 < 개정 2005.10.20 훈령 제128호 > < 개정 2007.04.23 훈령 제133호 >

정원의 상근인력의 정수표(7조 관련)

1. 300일이상 정원의 상근인력의 정수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 수 원	환 경 미 화 원
		소 계	시설물·장비 유지관리 인부	현장공사· 작업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업인부	단순 조무인부		
총 계	271	66	40	12		14	7	198
총 무 과	15	15	10			5		
자치행정과	4	4	4					
기획홍보과	1	1				1		
민원여권과	1	1				1		
지역경제과	2	2	2					
주민생활지원국 (일자리창출)	2	2				2		
사회복지과	1	1				1		
청소환경과	199	1				1		198
공원녹지과	24	24	24					
맑은환경과	1	1				1		
교통행정과	1	1				1		
도 로 과	7						7	
치수방재과	12	12		12				
보건행정과	1	1				1		

2. 청원경찰의 정수

부 서 별	합 계	경비청원 경 찰	단속감시청원경찰	
			소 계	그린벨트단속
총 계	4	2	2	2
총 무 과	2	2		
공원녹지과	2		2	2

< 별 표 > < 개정 2002.1.28 훈령 제108호, 2003.2.7 훈령 제113호, 2003.3.7 훈령 제114호 >
 < 개정 2003.06.16 훈령 제115호 > < 개정 2004.05.21 훈령 제119호 >
 < 개정 2004.07.01 훈령 제121호 > < 개정 2004.11.01 훈령 제125호 >
 < 개정 2005.10.20 훈령 제128호 > < 개정 2007.04.23 훈령 제133호 >

정원의 상근인력의 정수표(7조 관련)

1. 300일이상 정원의 상근인력의 정수(변경전)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 수 원	환 경 미 화 원
		소 계	시설물·장비 유지관리 인 부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 조무인부		
총 계	271	58	33	16		9	9	204
총 무 과	12	12	5			7		
자치행정과	4	4	4					
사회복지과	1	1				1		
청소환경과	205	1				1		204
공원녹지과	27	27	27					
토 목 과	9						9	
하 수 과	13	13		13				

2. 청원경찰의 정수

부 서 별	합 계	경 비 청 원 경 찰	단 속 감 시 청 원 경 찰	
			소 계	그 린 벨 트 단 속
총 계	4	2	2	2
총 무 과	2	2		
공원녹지과	2		2	2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 - 370호

망우 제1구역 (망우동 178-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1. 우리 구 망우동 178-1번지 일대 망우 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06. 0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0.06.01 ~ 2010.07.01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중랑구청 주택과(2층)(☎ 2094-2132)

망우 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432-2334)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중랑구청 주택과(2층)(☎ 2094-2132)

라. 공람내용(별첨)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같음합니다.

별첨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망우 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망우 제1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178-1번지 일대	25,109.6	

3.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신청 내용

가. 제 목 : 망우 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나. 토지이용계획

- 획지계획 : 19,646.2㎡(공동주택용지 : 19,646.2㎡)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3,213.2㎡, 공원 2,250.2㎡

다. 건축계획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21.65%(25%이하)
- 용적률 : 236.55%(236.64% 이하)
- 층 수 : 지하2층, 지상 최고 17층
- 건립세대 : 416세대 아파트 10개동
60㎡이하 : 90세대(21.63%), 85㎡이하 : 260세대(62.50%), 85㎡초과 : 66세대(15.87%)

4. 정비구역지정(안)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규	망우 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랑구 망우동 178-1번지 일대	-	증) 25,109.6	25,109.6	-

나. 정비구역 지정사유

-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건축물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으로 결정)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인접 단독주택일부지역을 포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5. 정비계획(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사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 감	변경		
총 계		25,109.6㎡	-	25,109.6㎡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5,109.6㎡	감 25,109.6㎡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증 25,109.6㎡	25,109.6	100.0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51	6	국지 도로	335	망우동 178-1	망우동 213-3	일반 도로		중랑구고시 제1999-71호 (1999.11.25)	-
변경	소로	3	51	6	국지 도로	277	망우동 227-5	망우동 213-3	일반 도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일부구간 폐지 (L=58m)
기정	소로	3	54	6	국지 도로	67	망우동 233-3	망우동 178-40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 고시제47호 (1974.04.20)	상봉지구
변경	소로	3	54	6	국지 도로	40	망우동 233-3	망우동 185-5	일반 도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일부구간 폐지(L=27m)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55	망우동 178-41	망우동 178-41	일반 도로		중랑구고시 제2009-43호 (2009.09.30)	이화학당부지 "민영주택건설사업"
변경	중로	3	1	12	집산 도로	55	망우동 178-1	망우동 178-1	일반 도로			기존 도시계획도로 6m 포함해서 본 정비구역지정 구역내 6m확폭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86	망우동 178-1	망우동 178-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 고시제280호 (1982.07.22)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전 구간폐지(L=86m)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30	망우동 178-1	망우동 178-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 고시제280호 (1982.07.22)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전 구간폐지(L=30m)
폐지	소로	2	-	8	국지 도로	63	망우동 178-1	망우동 178-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 고시제280호 (1982.07.22)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전 구간폐지(L=63m)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86	망우동 537-2	망우동 178-86	일반 도로			기존 6m도로 포함해서 본 사업지 구역내 2m 확폭
신설	소로	2	2	8	국지 도로	245	망우동 178-86	망우동 178-1	일반 도로			
신설	중로	3	2	12	집산 도로	130	망우동 535-1	망우동 535-1	일반 도로			기존 9m도로 포함해서 본 사업지 구역내 3m확폭

※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성과에 따름

■ 공원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망우동 146-18번지 일대	-	2,250.2	2,250.2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준면적 (㎡)	계획면적 (㎡)	비 고
신설	경로당	도면참조	66.60㎡	75.00㎡	· 100세대 이상, 40+(세대수-150)×0.1㎡ 이상
신설	어린이놀이터	도면참조	616.00㎡	1,066.00㎡ (2개소)	· 50세대 이상, 300+(세대수-100)×1.0㎡ 이상
신설	근린생활시설	도면참조	2,496.00㎡	2,000.00㎡	· 세대수×6㎡ 이하
신설	주민운동시설	도면참조	해당없음	-	· 500세대 이상
신설	주민공동시설	도면참조	61.60㎡	530.00㎡	· 300세대 이상, 50+(세대수-300)×0.1㎡ 이상
신설	보육시설	도면참조	90.09㎡	100.00㎡	· 300세대 이상, 21인×4.29㎡ 이상
신설	문고	도면참조	33.00㎡	40.00㎡	· 300세대 이상, 33㎡ 이상, 6석 이상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망우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5,109.6	획지1	19,646.2	망우동 178-1번지 일대	53	-	-	53	-	

-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정비계획) (예정법정상한)	층수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망우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5,109.6	획지 1	19,646.2	망우동 178-1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71,000 이하	25 이하	236.64 이하	최고17층 (평균14.7층)
			획지 2	2,250.2		공원	관계 법령에 따름			
			획지 3	3,213.2		도로	관계 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 및 비율(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009. 7. 30 개정)							
			구 분	세대수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율(%)	전용면적(㎡)	비율(%)			
			계	416	100.00	35,502.20	100.00			
			60㎡이하	90	21.63	5,395.50	15.20			
			60~85㎡이하	260	62.50	22,084.40	62.20			
			85㎡초과	66	15.87	8,022.30	22.60			
			○주택재건축 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60㎡ 이하는 전체세대수의 20%이상) - 85㎡이하 주택전체세대수의 60% 이상 : 84.13% - 85㎡이하 주택전체연면적의 50% 이상 : 77.4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대지 및 도로 경계부분 : 3m							

※ 건축물의 평균층수 및 최고층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름

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경관분석 참조
환경보전	자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공간확장 	환경분석 참조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	수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구릉지, 평지에 위치하여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환경분석 참조
	산사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해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바.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북측으로 송곡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337m) 송곡여자중학교(337m) 송곡여자고등학교(337m) 동원초등학교(195m) 영란여자중학교(31m) 이화여대병설미디어학교(31m) 송곡고등학교(174m) 동원중학교(58m) •대상지 남측으로 망우초등학교(33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사.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①	망우동 178-1 번지 일대	19,646.2㎡	

아.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망우 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현황 : 367세대 계획 : 416세대 증) 49세대	해당사항 없음

공 램 의 견 서

(접수번호 :)

□ 대상사업

안 건	중랑구 망우동 178-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사업위치	중랑구 망우동 178-1번지 일대

□ 의견제출자

성 명	(☎ :)
주 소	
소유물건	위 치
	규 모

□ 제출의견

2010. . .

의견제출자 성명 (인)

중 랑 구 청 장 귀 하